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4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규남, 남창진, 문성호,
박강산, 박승진, 아이수루,
, 유정희, 이원형, 이종환,
정준호, 홍국표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립사진미술관과 서울시립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소장미술관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장미술관자료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별도의 관리책임자 지정(안 제23조제1항)
- 나.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화함(안 <별표>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**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있다.”를 “있으며,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분임을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
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	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(서소문동)
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	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(남현동)
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	서울 노원구 동일로 1238 (중계동)
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	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-1 (상암동)
서울시립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	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-1 (창신동)
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	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(평창동)
서울시립 사진미술관	서울 도봉구 마들로13길 68 (창동)
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	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9길 53 (독산동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등) ① 시장은 소장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	제23조(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등) ① 시장은 소장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, <u>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23조(소장미술관자료 관리 책임자 지정 등)에 분임 자료 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통상 분임 공무원 지정에 수반¹⁾되는 별다른 비용 발생요인은 없어 **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**
- 또한 [별표]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최신화하여 현실과 조례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내부행정 절차에 불과] 분임지정은 내부 행정절차에 불과해 해당 규정이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※ 참고로 분임지정 제도는 행정적 권한 위임을 통한 업무효율성과 책임 명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